

## ■ 최신 법령 ■

# [자원·에너지·환경 & 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채희석 변호사 | 주성훈 변호사

## 1. 개정 이유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내 태양광에너지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의 태양광에너지 공급목표량[2016년까지 1,577기가와트아워(GWh)]의 달성시한을 2015년까지로 1년 단축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연도별 태양광 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조정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를 종전의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에서 수력,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신고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내용

### 가. 태양광 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변경(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별표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공공기관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필요한 경우 일정량 이상을 특정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2항).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종래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비율에 대한 연도별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제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도	개정전(단위 : GWh)	개정후(단위 : GWh)
2012년	276	276
2013년	591	723
2014년	907	1,156
2015년(이후)	1,235	1,577
2016년(이후)	1,577	

위에서 살펴본 공급의무자는 발전량 중 의무공급량 이상의 에너지를 직접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다른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후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합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 제12조의7). 이에 따라 당분간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원 확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는 (i) 태양에너지, (ii) 바이오에너지, (iii) 풍력, (iv) 수력, (v) 연료전지, (vi)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vii) 해양에너지, (viii) 폐기물에너지, (ix) 지열에너지, (x) 수소에너지가 포함됩니다(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신고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신·기술에너지법 제22조), 그간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에너지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신고대상 에너지가 나머지 신·재생에너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풍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수력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5. 연료전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7. 해양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8. 폐기물에너지로서 별표 1에 따른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9. 지열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10. 수소에너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다만, 안전관리 분야는 가스기사만 해당한다.

3. 다운로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법률 24338호)